

개정 전	개정 후	~
<p><b>제1조 적용범위</b></p> <p>사업자 주거래 우대통장(구 외환은행)(이하 '이 예금'이라 합니다)거래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,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<u>예금거래기본약관(구 외환은행),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(구 외환은행)</u> 및 개별 계좌의 해당 예금별 거래 약관을 적용합니다.</p> <p><b>제2조 ~제5조 (생략)</b></p> <p><b>제6조 이자</b></p> <p>① 이 예금의 이자는 다음 각 호에 명시된 예금 종류별 이자계산 기준일에 셈하여 해당 원가일(이자계산기준일 다음날)에 원금에 가산합니다.</p> <p>1. 보통예금 및 MMDA : 매년 <u>6 월, 12 월 넷째주 토요일</u></p> <p>2. 저축예금 및 기업자유예금 : 매년 <u>3, 6, 9, 12 월 넷째주 토요일</u></p> <p>② 이 예금의 이자는 최초 예금일 또는 원가일부터 원가일 또는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기간으로 하고, 매일의 <u>최종잔액을 평균하여</u> 매 영업일에 영업점 및 은행홈페이지에 고시한 금리로 이자를 계산합니다.</p> <p>③ 다른 예금에서 이 예금으로 <u>또는 이 예금에서 다른 예금으로 전환한 계좌인 경우 전환일이 속한 결산기에</u> 대해서는 해당 결산기 <u>최초 보유 통장</u>의 금리를 적용합니다.</p> <p><b>제7조 수수료 우대서비스의 제공</b></p> <p>① 이 예금 가입자가 아래 우대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월에 아래와 같이 수수료 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단, 신규 가입월 및 가입월 다음달까지는 충족여부에 관계없이 제②항, 제③항의 수수료 우대서비스 I, II를 제공합니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아래 요건 중 '가'를 충족한 경우에는 제②항의 수수료 우대서비스 I 를 제공하며, '가', '나'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제②항, 제③항의 수수료 우대서비스 I, II 제공</p>	<p><b>제1조 적용범위</b></p> <p>사업자 주거래 우대통장(구 외환은행)(이하 '이 예금'이라 합니다)거래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,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<u>예금거래기본약관,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</u> 및 개별 계좌의 해당 예금별 거래 약관을 적용합니다.</p> <p><b>제2조 ~제5조 (좌동)</b></p> <p><b>제6조 이자</b></p> <p>① 이 예금의 이자는 다음 각 호에 명시된 예금 종류별 이자계산 기준일에 셈하여 해당 원가일(이자계산기준일 다음날)에 원금에 가산합니다.</p> <p>1. 보통예금 및 MMDA : 매년 <u>6 월, 12 월의 제 3 금요일</u></p> <p>2. 저축예금 및 기업자유예금 : 매년 <u>3 월, 6 월, 9 월, 12 월의 제 3 금요일</u></p> <p>② 이 예금의 이자는 최초 예금일 또는 원가일부터 원가일 또는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기간으로 하고, 매일의 <u>최종잔액에 대하여</u> 매 영업일에 영업점 및 은행홈페이지에 고시한 금리로 이자를 계산합니다.</p> <p>③ 다른 예금에서 이 예금으로 <u>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일부터 이 예금의</u> 금리를 적용합니다.</p> <p><b>제7조 수수료 우대서비스의 제공</b></p> <p>① 이 예금 가입자가 아래 우대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월에 아래와 같이 수수료 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단, 신규 가입월 및 가입월 다음달까지는 충족여부에 관계없이 제②항, 제③항의 수수료 우대서비스 I, II를 제공합니다.</p> <p>1. (좌동)</p> <p>2. 아래 요건 중 '가'를 충족한 경우에는 제②항의 수수료 우대서비스 I 를 제공하며, '가', '나'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제②항, 제③항의 수수료 우대서비스 I, II 제공</p>	<p>기본적용 약관 변경</p> <p>결산일 및 결산 방식 변경</p> <p>상품전환 시 금리적용 문구변경</p>

항 목	우 대 요 건
가	전월에 이 예금의 평균잔액이 50만원 이상인면서, 전월에 이 예금에 각종 공과금 자동이체 등록이 2건이상 있는 경우 (단, 지로, CMS를 통한 자동납부에 한 함)
나	전월에 이 예금에서 아파트관리비 자동이체실적이 있거나, 전월에 이 예금을 결제계좌로 하는 하나카드의 신용/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경우

신 설

항 목	우 대 요 건
가	전월에 이 예금의 평균잔액이 50만원 이상인면서, 전월에 이 예금에 각종 공과금 자동이체 실적이 2건이상 있는 경우 (단, 지로, CMS를 통한 자동납부에 한 함)
나	전월에 이 예금에서 아파트관리비 자동이체실적이 있거나, 전월에 이 예금을 결제계좌로 하는 하나카드의 신용/체크카드 결제 실적이 있는 경우

#### 제8조 우대서비스 변경

- ① 수수료 우대서비스의 세부 요건은 변 경이 가능하며, 은행은 이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약관 시행일 1개월전에 변경 내용을 영업점,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합니다. 다만,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시행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합니다.
- ② 제1항의 변경 내용이 가입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, 전자우편, 휴대폰 문자 등 가입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까지(제1항 단서 사유에 의한 변경으로 가입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에는 시행 즉시)통지합니다. 다만, 기존 가입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가입자가 변경 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- ③ 은행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"가입자는 약관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 약관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"라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합니다. 다만, 제1항 단서 사유에 의한 변경으로 가입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- ④ 가입자가 제3항 본문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 약관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

공과금  
자동이체  
및 카드  
실적  
기준  
변경

우대서비  
스 경시  
게시 및  
공지방법  
신설

	것으로 봅니다.	
--	----------	--